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』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 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입니다.

먼저 『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해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
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조례안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‘위원회’란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,
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됩니다.

하지만 이와 관련한 교육청 위원회 조례는
그 적용 범위에

‘그 밖에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구성·운영하는 위원회’를
설치할 수 있다고 적시하여,

자칫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도
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는
의미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,
위원회 설치 근거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
교육청의 위원회 설치 근거가
서울시의 위원회 설치 근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될 수
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
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